

# 김포시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제 3649 호
----------	----------

제출년월일 2025. 7. 11.  
제출자 황성석 의원

## 1. 제안이유

-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국가 정책 기조에 따라 전기차 및 수소차 등 친환경 차량의 보급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으며 대중교통 및 공공용 차량의 전환도 요구되고 있음.
- 친환경차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충전 인프라 확충이 필수적인바, 공영차고지를 충전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이 필요함.
- 이에 전기 및 수소연료전지 공급시설의 설치·운영자를 사용자 정의에 포함시켜 친환경 교통체계 전환을 지원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사용자 정의에 전기·수소연료전지 공급시설 설치자 및 운영자 포함 명시 (안 제2제3호)

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및 현행규정 : 「김포시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」
- 나. 예산조치 : 별도협의
- 다. 그 밖의 사항
  - 1) 입법예고
    - 가) 예고기간 : 2025. 7. . ~ 2025. 7. .
    - 나) 예고결과 :
  - 2) 부서협의
    - 가) 협의기간 : 2025. 6. . ~ 2025. 7. .
    - 나) 협의결과 :
  - 3) 관련부서 : 대중교통과

# 김포시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김포시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3호 중 “천연가스 공급시설을 설치하는”을 “천연가스, 전기, 수소연료전지 공급시설을 설치 또는 운영하는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2. (생략)</p> <p>3. “사용자“란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면허를 받은 사람 또는 등록을 한 자(이하 “운송사업자“라 한다)와 버스에 연료 공급을 위한 <u>천연가스 공급시설을 설치하는</u> 업체(이하 “충전업체“라 한다) 및 「자동차관리법」 제35조의8에 따라 내압용기 재검사를 대행하는 자 중 <u>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를</u> 받은 사람을 말한다.</p> <p>4. (생략)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천연가스, 전기, 수소 연료전지 공급시설을 설치 또는 운영하는</u>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4. (현행과 같음)</p>

## 김포시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김포시 공영차고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16. 12. 30.>

**제2조(정의)**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공영차고지”란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」 제7조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차고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김포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설치한 시설물(부속시설물을 포함한다)을 말한다. <개정 2016. 12. 30.>
2. “수탁자”란 공영차고지를 위탁받아 운영·관리하는 자를 말한다.
3. “사용자”란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면허를 받은 사람 또는 등록을 한 자(이하 “운송사업자”라 한다)와 버스에 연료 공급을 위한 천연가스 공급시설을 설치하는 업체(이하 “충전업체”라 한다) 및 「자동차관리법」 제35조의8에 따라 내압용기 재검사를 대행하는 자 중 공영차고지의 사용 허가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.
4. “대기소”란 제1호의 공영차고지 외의 장소에서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」 제7조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의 대기 장소와 운송종사자의 휴게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. <신설 2020. 9. 29.>

**제3조(공영차고지의 명칭 및 위치)** 공영차고지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월곶 공영차고지 : 김포시 월곶면 갈산리 560번지 일원 <개정 2016. 12. 30.>
2. 양곡 공영차고지 : 김포시 양촌읍 양곡리 1341-1번지 일원

**제4조(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)** ① 시장은 운송사업자, 충전업체 및 내압용기 재검사를 대행하는 자 등에 공영차고지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.

- 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를 따른다. <개정 2017. 9. 27., 2020. 9. 29.>
-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가스충전 관련 시설 중 김포시에 기부 채납된 건축물의 무상사용 기간은 20년 이내로 한다.
- ④ 시장은 김포시 내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운송사업자에게 우선적으로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. 다만, 공영차고지의 여유 공간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시에 기·종점을 두고 있는 운송사업자에게도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.
-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사항 이외에 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 기준·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**제5조(사용료)** ① 시장은 공영차고지 및 대기소를 사용하는 운송사업자, 충전업체 및 내압용기 재검사를 대행하는 자에 대하여 별표 1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 징수한다. <개정 2020. 9. 29.>

1. <삭제 2020.9.29.>
2. <삭제 2016.12.30.>

-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선납하여야 하며,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사용 허가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계약 일 부터 60일 이내, 1년 이상일 경우에는 매년 당초 계약 일에 해당하는 날부터 60일 이내로 한다. 다만, 그 사용 허가 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에는 사용료를 연 4회 분할 납부할 수 있으며, 그 납부 시기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.

③ 사용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연체요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연체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: 연 100분의 12
2. 연체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: 연 100분의 13
3.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 : 연 100분의 14
4. 연체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: 연 100분의 15

④ <삭제 2016.12.30>

**제6조(사용자의 의무)** ① 사용자는 공영차고지 및 공영차고지에 설치된 시설(이하 “사용시설”이라 한다)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.

② 사용자는 사용시설 등의 파손, 장애 또는 그 위험이 있는 상태를 발견하는 경우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16. 12. 30.>

**제7조(사용자의 행위제한)** ① 사용자는 공영차고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여객자동차 이외의 차량을 주차시키는 행위 <개정 2016. 12. 30.>
2. <삭제 2016.12.30>
3. 「소방기본법」에서 금지한 위험물 등을 취급하는 행위
4. 환경관련법(「대기환경보전법」, 「물환경보전법」, 「소음·진동관리법」, 「폐기물관리법」)에서 허용하고 있는 범위 이상의 악취·소음 등의 공해를 발생시키는 행위 <개정 2020. 7. 1., 2021. 7. 2.>
5. 그 밖에 관계법령에서 정한 제한된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

② 사용자는 공영차고지 및 사용시설을 제3자에게 임대하여서는 아니된다. 다만,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7조 제2항 단서에 따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인 경우에 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자에게 사용·수익할 수 있다. <신설 2016. 12. 30., 2021. 7. 2.>

**제8조(사용허가의 취소)**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 할 수 있다.

1. 시장이 공공목적의 필요에 의하여 시설의 용도를 변경하고 사용 허가된 목적물을 회수하는 경우. 이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하기 6개월 전에 사용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
2.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해태 하였을 경우
3. 사용료를 6개월 이상 연체하였을 경우
4.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의 행위제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
5. 그 밖에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하여 시장이 발하는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경우

**제9조(관리의 위탁)** 시장은 공영차고지의 운영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김포도시관리공사에 위탁하거나 공공 시설물을 전문으로 관리하는 관내 법인·개인 등에 공개경쟁을 통하여 위탁할 수 있다. <개정 2020. 12. 31.>

1.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
2.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, 복구비용의 징수 등 원상복구에 관한 사항
3.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의 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

4.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의 취소에 관한 사항
5. 공영차고지 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
6. 그 밖에 공영차고지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

**제10조(관리지원)** 시장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영차고지의 운영관리를 김포도시관리공사로 위탁 한 경우에는 그 관리에 필요한 장비 또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 <개정 2020. 12. 31.>

**제11조(업무감독 등)** ① 제9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사람이 제9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.

- ② 시장은 차고지의 운영·관리에 필요한 경우 사용자 또는 수탁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차고지의 관계시설 또는 관계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사용자 또는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
**제12조(준용규정)**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「김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」 및 「김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」의 규정을 준용한다. <개정 2016. 12. 30.>

**제13조(연체시의 징수방법)**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사용료가 체납되었을 경우에는 「지방세징수법」의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. <개정 2017. 6. 30.>

**제14조(시행규칙)**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